

제8조 【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】

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 당사자

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,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.

2. 계약기간

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,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3. 계약목적

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(보호자)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4 월 이용료

- (1)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- (2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- (3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%, 60%경감한다.
- (4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.

5.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방문요양,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.

6.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.

제9조 【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】

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(1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.
 - (2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.
 - (3) 이용자의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

- (4) 이용자에게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.
- (5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2.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(1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.
- (2) 이용자에게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.
- (3)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.
- (4)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“기관”에 통보의무.
- (5) 장기줄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.
- (6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.

3. 계약의 해제

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- (1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.
 - (2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.
 - (3)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.
 - (4)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.
 - (5)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.
-